

• 1988년 2월 10일 발행
 • 발행인 / 이효재
 • 발행처 / 한국여성민우회
 • (1)(2)(3) - (0)(1)(3)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0-6
 ☎ 313-1060
 • 갑 / 500원

함께 가는 여성

1988

2

통권 제6호



부엌은 어둡고 나르던 가난에 가슴 까맣게 그을린 탓일까, 내려앉은 아궁이 시커먼 가마솥마냥 무거운 엄마의 마음에 또 다시 저녁밥 짓는 불꽃을 사르고
 너희 둘은 그 온기로 마냥 즐겁기만 하구나 (사진·박정희·1985년도 달력 '일하는 여성'에 수록)

목차

- | | | | |
|-------|--|-------|---|
| 2-3 | 소식/엑스태크사 위장매점 혐의방문대응전 1천5백명 참가·한양대병원노조 전회고향원 부당해고에 항의·성고문 문귀동 드디어 심판대에·여언 제2차 정기총회·여성들을 위한 '나눔의 집' 개원·무크지 「여성2」 출판기념회·대구여성회 광주전남여성회 창립 | 13 | 만남/평화노조협의회 회장 양건호씨 "평화협이 사는 길은 굳건한 연대뿐" |
| 4-5 | 이효재 민우회 회장과 함께/본격 여성대중운동을 시작할 때 | 14-15 | 생활칼럼/연탄질기와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낚말맞추기 |
| | 여성만평 | 16-17 | 우리작장 이야기/여직원의 '메아리'가 압력단체로 (조흥은행·우리 회사 위장주업자(육산봉제) 이런 모임/봉진을 위한 방모금 |
| 6 | 이렇게 생각한다/남녀고용평등법을 보는 눈 | 18 | 여성민우회상담실/37개월만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
| 7 | 생활속의 실천/양원태군에 끌려야 할 관심 | 19 | 독자독후감/압박이 올린 일을 놓는다 |
| 8-9 | 이야기마당/결혼퇴직을 전제로 없애려면 | | 『함께 가는 여성』을 읽고/가난한 엄마들의 이야기가 바뀐 이야기마당 |
| 10-11 | 기획/농어촌 의료보험 "오죽하면 10년 기다려온 보정증을 반납하겠습니까"·통합주의를 주장한다 | 20 | 게시관/제3기 직장여성교실 3월 5일부터 개설·한국여성민우회 상담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
| 12 | 만남/나 주 수세거부운동에 앞장선 송정례씨 "못내 못내 절대 못내 부당 수세 절대 못내" | | |

이 경숙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맥스텍사 위장폐업 항의방문 대행진 1천5백명 참가



지난 2월 7일 1천5백여명의 노동자, 학생, 시민들은 마포에서부터 종로4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무실까지 대행진을 벌였다. 민주생권국민운동 노동자 위원회 위장폐업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맥스텍사 위장폐업 철회촉구 항의방문대행진'이었다.

오후 2시 마포에 있는 맥스텍사 앞에서 항의방문 발대식을 갖고 시작된 이날 대행진은, 마포에서 종로4가까지 전경과 사복경찰들의 심여차려에 걸친 저지속에서 진행되었는데 시종일관 '노조탄압 중지하라' '위장폐업 철회하라' '평화시위 보장하라'는 구호를 연호하면서 평화리에 이루어졌다.

2시간에 걸친 행진끝에 종로앞에 모인 노동자, 학생, 시민들은 경찰의 삼엄한 경비 때문에 '민주화추진위원회'를 방문하진 못하고 산발적으로 구호를 외치던 중 경찰에 의해 해산되었다. 이때 다수의 학생, 노동자, 시민들이 연행되었다.

전산자료 입력회사인 맥스텍사 노동자들은 그동안 기본급 9만7천원의 저임금,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작은 글씨와 컴퓨터화면의 광선으로 인한 시력장애 등 일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일해오다 작년 8월 28일 노동조합을 결성했었다.

이후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회사측은 지난 11월 29일 '노조가 불법해서 도저히 회사운영 못하겠다'며 폐업을 시도

했다가 2백50여 노동자들의 5박 6일간의 투쟁으로 폐업을 철회한 바 있는데, 신년휴가 중이던 1월 2일 몰래 기계와 설비를 빼돌리고 노조와 합의없이 불법적인 위장폐업을 단행하였다.

폐업이유는 극심한 경영난이라고 했지만 지난 1차폐업 당시 역촌동 신탁은행에 사무실을 마련해두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적이 있고, 금년 5월까지 물량이 밀려 있으며, 빼돌린 기계 60대로 근로복지회관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려 한 점 등으로 보아 불법적인 위장폐업임을 알 수 있다.

맥스텍사 2백50여 노동자들은 1월 4일부터 마포작업장에서 위장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철야농성중인데 27일부터는 회사가 빼돌린 기계가 들어 있는 근로복지회관 308호에서도 일부가 농성에 들어가 현재 두곳에서 농성중이다.

전기·물·난방마져 차단된 상태에서 한달 가까이 농성중이던 노동자들은 25일 본사에서 '사장은 협상에 응하라' '위장폐업 철회하라'며 항의하던 중 김승섭(대리), 이용재(과장) 등의 관리자와 2만원씩 받고 고용된 50여명의 구사대들에게 폭행을 당해 현재 2명이 입원중이기도 하다.

또한 폭력현장에서 마포경찰서 형사인 이용선과 이정식은 팔장을 낀 채 수사관하였으며, 노동부는 그동안 맥스텍사 노동자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시키

고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의 회사가 같은 근로복지회관 건물에 사무실을 임대해 작업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을 은폐하여 이 사건에 대한 당국의 진의를 의심케 하고 있다.

한양대 병원노조 전화교환원 부당해고 항의

2월 10일 현재 한양대 부속병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는 ▲노조활동 보장 ▲근로기준법 준수 ▲기본급 2만7천원 지급 ▲교환원 원칙 전원복직 ▲교환원 13명 중원 등을 요구하는 노조위원장 차수현씨(28)의 3일째 단식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조합원들이 8일간 농성을 한 끝에 노사간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데 그당시 협약내용중 하나가 '교환업무의 반자동화에 따른 감소인원은 최대한 해결하되 대상자는 3개월간 대기하였다가 타부서에 자리가 있으면 부서이동시킨다. 조합원을 우선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병원측은 불과 협상 1주일만인 12월 24일 18명의 교환원중 9명에 대해 3개월치 월급을 지불, 일방적인 해고조치를 단행하고, 실직위험이 높고 중립계획이 없는 기관의 교환직이나 심지어 재봉사, 타자직 등 타부서로 전환시킨다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해고근거로 제시된 '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암기력의 쇠퇴로 신속·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고, 해고자 중 7명이 노조원인 점, 먼저 해고를 시켜버린 점 등은 단체협약을 이행치 않은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노조측은 항변하고 있다. 또 이는 대외적으로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켰다는 생색만 낸을 뿐, 복직이 아닌 재임사처리로서 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원활한 교환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3교대 기준, 최소한 13명이 필요하다는 것. 더구나 총무과 홍성순계장은 1월 30일 교환원 해고문제에 대한 협상도중 노조위원장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2월 1일부터는 전 조합원이 '해고자 원칙에 복직' '단체협약 이행하라' '조합장에게 폭행이란'이라고 쓴 빨간 리본을 부착한 채 근무를 하고 있고, 9일 저녁부터는 노조위원장 단식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대의원 동조 철야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성고문 문귀동 드디어 심판대에 권양 변호인단 재정신청 받아들여져

그간 여론의 심판을 받아온 문귀동이 이제 진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대법원은 1월 29일 1년 2개월여를 끌어온 부친경찰서 성고문사건의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변호인단의 재정신청 재항고를 받아들여 2월 4일 이 사건에 대한 관련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보냈다.

86년 7월 2일 인천지역 구속자가족들의 부친경찰서 앞 농성으로 처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성고문사건은 그동안 몇차례의 고소와 맞고소 끝에 1백66명이라는 사상 최대 변호인단의 재정신청 재항고를 야기시켰었다.

권양이 문귀동을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한 것에 맞서 문귀동이 권양을 명예훼손 혐의로 무고 혐의로 고소하여 공방전을 펼친 이 사건은, '성을 혁명의 도구화했다'는 인천지검의 발표와 함께 문귀동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과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으로 끝맺는 듯 했었다.

그러나 재정신청 재항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투쟁과 성고문 폭로대회, 고대 여학생 3명의 인천지검 방화, 변호인단의 성명전, 종교단체와 '여성단체연합 부친경찰서 성고문 공동대책위원회' 등의 끈질긴 노력으로 사실상의 승리인 대법원의 원심결정 파기를 가져온 것이다.

한편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중 지난해 7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권인숙양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정치상황의 부산물이 아닐길 바란다"면서 "당시 사건을 은폐 조작하려한 모든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했고, 권양의 변호인단은 수사결과와 왜곡발표 경위 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당시 수사기록의 공개를 요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제2차 정기총회 "조직기반 강화의 한해로"

한국여성단체연합 제2차 정기총회가 각 회원단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월 29일 한국기독교장로회선교교육원에서 열렸다.

87년 2월 18일 발족한 이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여성운동의 올바른 자리매김에 기여해 온 여연은 2차 정기총회를 통해 그 조직적 면모를 새로 갖추게 되었다. 4·13호헌초치 철회 요구농성, 서명운동전개로부터 6월국민항쟁 참가, 국민운동본부와의 연대활동 등 고양되는 민주화투쟁에서 여성들의 선봉에 섰던 87년의 성과를 토대로, 여연은 올 한해 좀더 여성운동력의 내실을 기하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직적으로는 여성운동의 주요과제인 기층여성들의 여성운동력화를 위해, 노동위원회와 농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는 땀땀배운동을 비롯한 작년의 여성생존권투쟁지원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사후적인 대책차원에 머물렀다는 반성속에서 여성노동운동, 여성농민운동의 발전에 보다 정책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담보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다.

이러한 조직적 구조를 새롭게 갖춘 위에, 여연을 대표하는 회장단으로서 회장에 이우정, 부회장에 이영순(한국여성노동자회 회장), 이미경(한국여성민우회 부회장)씨가 선출되었다.

여성들을 위한 '나눔의 집' 개원

지난 1월 17일 일터와 가정에서 산업역군으로서, 어머니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땅의 모든 여성들을 위한 '나눔의 집'(이사장 : 이효재)이 문을 열었다.

'나눔의 집'(인천시 남구 도화3동 52-20 17동2반)은 인천지역의 일하는 여성들이 사업장내 노동문제, 성차별 문제, 막아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타개해 나가고자 개원된 것.

'나눔의 집'에서는 교양교육, 상담, 문화마당 개최, 기술훈련, 나눔문화마당, 맞벌이 부부의 만 2세~6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기존 단체들의



일방적인 운영 방식과는 달리 여성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 공간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무크지 「여성2」 출판기념회

2월 6일 여성사연구회(공동대표 : 정현백·전승희) 사당동 사무실에서는 「여성 2」출판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여성사연구회 회원 30여명과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학자들, 여성단체회원 등 50여명이 함께 한 자리에서는 준비를 시작한 지 2년만에 나오는 산고를 겪어온 무크지 「여성2」가 나오게 된 경위, 책 내용에 대한 평가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나오게 될 「여성3」에 대한 기대들도 함께 나누어졌다.

여성사연구회는 원래 무크지 「여성」을 만들던 그룹 일부가 공동의 연구를 해오던 틀로, 지난 5월 16일 연구회로 발족되었었다. 현재 회원이 약60여명. 무크지 「여성」을 내는 일 외에도 여성문제에 관한 각종 연구팀들이 그 산하에 운영되고 있다.

대구여성회 광주전남여성회 창립

지역사회 여성들의 여성단체 결성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1월 23일에 대구YWCA강당에서는 '대구여성회(회장 김진희)'가, 2월 7일에는 광주YWCA강당에서 '광주전남여성회(회장 이소라)'가 각각 창립총회를 가졌다.

지난해 말 창립된 제주여민회·충남여민회에 이어 대구여성회·광주전남여성회가 결성됨으로써 민주적인 여성운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해질 것이 기대된다.

이효재 민우회 회장과 함께

본격 여성 대중운동을 시작할 때

민우회가 여태까지의 여성운동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주부라든가 직장여성이라든가 빈민·노동여성 등이 단체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점이라고 하겠지. 4개월동안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아직 이런 여성들이 주인의식을 느낄 만큼은 되지 못한 것 같아. 물론 창립후 얼마 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 여성들이 주인되는 여성단체로서의 출발은 참으로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

“둥더둥둥, 둥더둥둥...”

신나는 북소리와 함께 너도나도 앉아 있던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춤을 춘다. 신명나는 춤사위가 한바탕 벌어지고 이제 모두 ‘결단의 시간’, 입을 모아 부르는 ‘선구자’ 소리가 드높다.

종로성당 강당, 창립한 지 4개월만인 1월 30~31일에 열린 한국여성민우회 제1회 정기총회의 열기가 뜨겁다. 지난해의 좌절을 딛고 한국 사회의 앞날과 한국 여성운동의 앞날속에서 차지하게 될 민우회의 역할을 점검하는 자리다.

정기총회가 끝나고 삼삼오오 돌아가는 사람들속에서 이효재 선생님(63·이화여대교수)의 소매자락을 붙들었다. 「함께 가는 여성」이 지난 1월호로 제5호까지 나왔지만 그 많은 등장인물 가

운데 정작 이 신문의 발행인이자 민우회 회장인 이효재 선생님은 한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었고, 때문에 독자들로부터 ‘하다못해 새해신년사라도 안신느냐는 항의적 주문이 쇄도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번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올해의 사업방향에의 정리를 부탁드리기로 했다. 물론 모두의 의견이 수렴된 것의 확인절차(?)이었지만 이 기회에 선생님의 개인 면면도 들어보아야지 하는 저의(?)도 포함된 것이었다.

주부들의 운동에 기대 커

—올해의 활동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선거과정중의 정치문제에 대한 집중성 때문에 각 문제분야별 일상활동이 힘차게 전개되지 못했던 것 같아. 이제 처음 목적인 바를 재확인하고 분과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여성운동이 대중적 확산을 꾀해야 되지 않겠어”

작년 선거기간중 ‘단일화’를 통한 민간정부의 수립을 진심으로 염원하셨던 선생님의 모습이 새삼 떠올랐다. 나이도 잊으신 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애쓰시던 그 모습 때문에 젊은 후배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셨던 선생님. 마침 입성(一聲)을 ‘선거기간중의 좌절에서 벗어나 모두에게로 확산해나가는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자’ 하시니…….

—지난 4개월 동안의 민우회 활동에 대한 평가는?

“민우회가 여태까지의 여성운동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주부라든가 직장여성이라든가 빈민·노동여성 등이 단체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점이라고 하겠지. 4개월동안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아직 이런 여성들이 주인의식을 느낄 만큼은 되지 못한 것 같아. 물론 창립후 얼마 되

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여성들이 주인되는 여성단체로서의 출발은 참으로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

선생님은 간부들과의 회의보다 일반 회원들과 어울려 말하는 자리가 더욱 즐겁다고 늘 말씀하셨다. 특히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대중속에 뿌리박은, 대중이 주인되는 운동이야말로 얼마나 힘있는가를 많이들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런 점에서 민우회는 일찍 바른 방향을 세운 것 같아”

짧은 동안의 활동기간이었지만 보강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교육에 대한 체계화가 시급한 것 같구만. 방만한 조직을 추스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지적은 일반회원들도 한결같은 의견들이어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각 부문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내부 조직체계의 효율화 문제가 중점 거론되기도 했다.

참고로 사업계획으로 제시된 직장여성분과의 교육계획을 소개하면,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일반여성들에게 여성문제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높여주고 바른 직업인으로서 직장내에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직장여성 교실’이 3월, 5월, 9월 3차례에 걸쳐 개설되어 있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작년에 실시되었었는데 1기를 모으는 과정에서 인원이 넘쳐 1주일 간격으로 2기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교육수강생 중 많은 수가 그후 민우회 회원이 되기도 했다.



도 했다.

또 ‘좋은 영화 감상회’도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여성문제 및 기타 사회문제를 다룬 영화를 감상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여성문제와 제반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교육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효재 선생님은 특히 주부들의 문제와 그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혼인한 여성으로서 가정생활에서 차





정기총회 모습. 신입회원들의 자기소개가 진행중이다.

지하는 여성의 지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주부들의 운동은 큰 의미와 역할을 갖게 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주부들의 위치중에는 소비자로서의 위치가 매우 큰 것 같아"

선생님의 이런 문제의식은 개인적으로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에 큰 관심을 갖게 하였다.

"물론 여성은 공적 노동에서의 생산자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여성들이 사실 소비자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 소비과정에서 여성들은 경제적 이익이 우선되기 때문에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별화 되어버리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구조속에 무비판적으로 예측지배되게 되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소비자협동조합운동은 공동구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영역의 활동, 예를 들면 공해문제, 지역문제, 나아가 정치문제까지도 공동으로 다룰 수 있는 일종의 공동체 운동이라고 할까.

80년대 새로운 여성운동을 보면서

피로하신 선생님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는 것 같아 서둘러 평소에 궁금하던 점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태두이신 선생님의 '여성운동관심사(史)'야말로 한국 여성운동의 전개사(史)가 아닐까 싶어 옛날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았다.

"60년대초, 그때는 요즘같이 여성운동이 활발치 못했던 때지. 내가 사회학이 전공이다 보니 '가족문제'를 연구하게 되었어. 보니까 가정내에서의 여성들의 소외현상이 심각하더군"

이 사회 발전에 인구의 반인 여성의 역량이 전혀 배제되어 있음을 깨닫고 '민주사회 발전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이라는 강연도 하시고 글도 쓰기 시

작하였다.('여성문제의 이론과 현실'이라는 저서는 아직도 여성문제의 고전적 입문서이다) 이것이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셈이다. 70년 전후해서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화곡동에다 헌 한신대 교수인 김주숙씨와 함께 '여성은 지역사회의 주인'이라는 취지의 시범적 프로젝트를 개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전체 사회의 민주화나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들이 미흡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바른 여성조직에 대한 시도들이 선거때 여성역량을 동원하기 위한 정부의 조직공세에 말려 도리어 어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바로 사회의 민주화와 여성의 인간화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갖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준 경험이었던 것이다.

"그후 정치권력에 대항해서 한국사회를 민주화시키지 않으면 여성문제도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걸 절감하게 되었어. 때문에 적어도 교수로서 내가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지"

결국 이러한 '할 말'은 이 사회의 비민주성 덕분에 80년에 해적으로 귀결되고 만다. 그러나 해적된 그 기간은 또 다른 창조적 시간인 셈이었다. 바로 후학들과 같이 개소한 '여성한국사회연구회'가 그것이다. 이곳 회장이기도 한 선생님은 작년 많은 젊은 연구원들을 추천, 바쁜 와중에도 연구회를 재창립하였다.

84년 복직된 이후는 더욱 바빠져서 하루 및 대학원 강의 하랴 논문 쓰랴 정신 없으시다.

"민우회의 회장을 맡은 것은 80년대 들어와 이 땅의 여성운동이 새롭게 발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야. 이 땅의 민주화는 여성들이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이제 이러한 생각을 실현할 조직이 생겼으니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다고. 특히 노동여성의 문제와 빈민여성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이때 우리 모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당부를 잊지 않으신다.

선생님은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라는 말씀을 끝으로 다음 약속을 위해 총총히 걸어가셨다. 선생님이 말씀은 환갑을 넘기도록 지치지 않고 일하라는 어마어마한(?) 부탁이라는 누군가의 해석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트리며 선생님을 전송했다.

여성만평



이렇게 생각한다

선거를 앞둔 지난 10월 31일 정기국회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의 발효일은 오는 4월 1일. 당시 이 법안을 두고 일부에서는 여성표를 의식한 선거용, 말만 번드르한 겉치레라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지만, 그나저나 대통령 선거열기에 가려 언제 통과되었는지도 모를 만큼 슬쩍 넘어가버렸다.

그러나 이 법의 발효를 코앞에 둔 지금, 우리 여성들은 이 '진보적인' 법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문제에 부딪친다. 이 법의 문안 자체는 말 그대로 여성들의 제 요구를 거의 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법은 실질적인 제재조치나 그 결정과정, 그리고 법치조항이 희미하여 정말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또 잘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 (제8조와 제22조) 빈번히 일어나는 '결혼퇴직'의 경우 사용자가 2백50만원이란 벌금형을 받게도 되어있는 걸 알 수 있다.

우리들은 이 법의 제정 의도가 여성들의 참 권익신장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러나 한편 '그럼에도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가'라는 점에 생각을 돌려야 한다.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남녀평등사회인듯한 외피를 만들어놓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여성들의 요구가 그만큼 실질적이고 조직적인 힘을 갖기 시작했다는 걸 뜻하기 때문이다.

법이란 원래 권력을 전자의 적절한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법을 어떻게 잘 이용하여 개선의 수단으로 삼을 것인가를 가능하는 것은 권력을 소유하지 않은 자의 몫으로 된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역시 마찬가지다.

「함께 가는 여성」에서는 이 적극적인 의미를 높이 산다는 취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안 전문을 실기로 했다. 억압받는 여성의 현실을 타개할 소중한 무기가 되었으면 한다.

(단 자면관계상 제1장 총칙중 목적, 기본이념 등의 4개 조항, 제2장 중 작업지도와 작업훈련 등의 2개 조항을 생략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장 총칙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남녀
고용평등법을 보는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등

제6조(모집과 채용)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장년·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장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모성보호 및 복지시설 설치

제11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생후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산후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육아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계속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아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을 위한 교육·육아·주거 등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근로여성을 위한 제1항의 복지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장 분쟁의 조정

제14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사업주는 제6조 내지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여성으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고충처리기관(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및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당해 사업장의 고충처리기관을 말한다)에 대하여 당해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그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제15조(분쟁해결의 지원)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여성이 신고한 고충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여성과 당해 사업주(이하 '관계당사자'

라 한다)의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그 고충의 해결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관계당사자에게 필요한 조언·지도 또는 권고를 하거나 고용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도록 한다.

제16조(고용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노동행정기관에 고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해 지방노동행정기관 구역안의 분쟁을 조정한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과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2인 이내의 상근전문위원을 둔다.

③ 위원의 자격·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위원회의 조정) ① 위원회는 관계당사자가 신청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당사자의 출석 또는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에 자료제공 등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보고 및 지도) 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조언·지도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제20조(경비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취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22조(벌칙)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백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이 법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원태군에 쏘려야할 관심



이번호의 생활실천은 널리 알려진 구로구청사건때 부상, 하반신 마비로 병상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양원태군(22·서울대 경영학과)에게 쏘려야할 우리의 관심에서 찾았다.

당시 한참 타들었던, 그리하여 양원태군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한 계기가 되었던 '12·16부정선거규탄의 열기'는 이제 거의 사그라진듯하다. 그래서 노태우씨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시대 '보통사람들'은 그때의 일을 이미 지나가버린 일로 많이들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일평생 하반신마비의 선고를 받은 양원태군은 지금도 병상에 누워 자신의 몸 전체로 이 사실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바로 이런 때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더 이상 온전한 신체로 살아갈 수 없게 된 양군에게 관심을 쏟는 일은 이제 단순한 위안이나 동정을 넘어서 이 시대 온갖 불의에 대한 뚜렷한 거부의 몸짓이 되고 있다. 양군에 대한 따뜻하고도 냉철한 관심, 이것을 조직할 때다.

"전경·백골단에 의해 5층강당문이 부서지자 한치 앞이 안보일 정도로 터진 최루탄 가스에 이미 지쳐있었던 사람들은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며 저항했지만 역부족, 뒤로 밀려눕니다. 강당 연단뒤로 문이 있고 이 뒤에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자연히 이 공간으로 몰려 갔습니다. 사과탄을 던지며 몰려오는 백골단에 의해 이 문마저 부서지고 무자비한 구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참을 얻어맞다 고개를 들었을 때 누

군가가 제 머리를 쇠파이프로 내리쳤고 저는 계속 뒤로 밀리다가 떨어졌습니다"

작년 12월 18일 새벽 6시 구로구청에서 밀반출되려던 부정투표함을 지키다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5층 강당에서 추락한 양군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당시 공정선거감시단원이었던 양군은 구로구청에서 부정투표함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곧장 달려갔고, 경찰의 강제진압에 맞서 싸우다 사고를 당했다.

양군은 척추 3·4·5번 뼈가 부서져 양쪽에 철골을 댔지만 신경마저 토막 토막 끊겨,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앉을 수도 걸을 수도 없는 '명치이하 완전마비'의 재기불능 선고를 받았다.

양군의 부모가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양군은 병원복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큰 아들이 군복무중 순직하자 하나 남은 아들을 유일한 희망이요 보람으로 여겨왔던 부모에게, 피와 최루가스로 범벅이 된 채 복도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아들의 모습은 경악 그 자체였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



는 슬픔을 누르며 양군의 부모는 그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분하고 억울하고 아프고 괴로워서 입술만 깨물고 말없이 누워있는 자식을 보는 저희들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집니다..... 평생을 누워서 지내야 할 자식을 이 늙은 부모가 세상을 뜬 뒤에는 누가 보살피고 대소변을 받아낸단 말입니까?"

양군의 부모는 경찰이 몇시간이나 양군을 방치하지만 앉았더라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전화로 항의하자

구로구청 부정선거합 밀반출을 저지하던 시민·학생들은, 부정선거합이 방봉자 등으로 위장된 채 밀반출되려 한 점, 대통령 선거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59조에 의해서 6시 이전에는 투표함을 옮길 수 없다는 점, 무엇보다도 법원에 투표함 보전 신청을 한 상태에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무시하고 서둘러 강제진압한 점 등을 들어 구로구청 사건은 그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양원태군도 "머리와 두팔만이 남았지만, 이 시대의 양심으로 살아남아 부정선거의 진상을 끝까지 증언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우리에게도, 부정선거와 폭력진압을 항의하고 올바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일이 남아있다.

내무부장관 이상희 : 733-1481

시정 국장 조종석 : 752-00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764-0011~7

●격려전화·격려편지들 /

양군과 양군 부모, 구로구청 부정선거합의무정 피해자가족협의회에 격려전화(764-0203)와 편지(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307호)를 보내자.

●치료비 모금으로 우리의 의지들 /

양군은 현재 고대부속 구로병원 610호에 입원하고 있다. 1천만원이 훨씬 넘어버린 치료비를 고교 교사인 양군 아버지(양동식씨·60)의 월급으로는 감당해 낼 수가 없다. 게다가 이 치료비는 결코 양군 부모가 내야할 돈이 아니다.

그런데도 경찰측은 자진추락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누구 하나 찾아오지도 않고 있다. 그 누구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 치료비 모금을 통해 민주시민의 의지를 확인해보자.

●국민은행 008-01-0333-250 조문숙

●조흥은행 325-6-077140 조문숙



지난 1월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서는 여직원 80명이 지방발령을 받았다. 연고지도 아닌 곳으로의 갑작스런 발령인데다가 그 대상이 주로 기혼여성이었기에 '또 하나의 결혼퇴직 조치'가 아니겠냐는 여성단체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쏟아졌지만,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당사자들은 현재 지방근무지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결혼퇴직 사건을 옆에서 많이 겪어냈던 여성들이 모여 이 문제를 의논했다. : 편집자주

사회: 85년도의 이경숙씨 사건, 87년도의 주소녀씨 사건 등을 거치면서 이제 적어도 결혼퇴직만큼은 없어지지 않았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천만에 말씀이지요. 공공연하게 '여자가 결혼하고도 다니느냐'하고 나오는 곳도 많고 또 내놓고 말하진 않아도 교묘한 방법으로 결국은 그만두게 만드는 회사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가정은 서울에 있는데 턱없이 지방발령을 낸다든가 아이를 키우게끔 전혀 뒷받침해주지 않아 스스로 그만두게 만드는 방법들이지요. '결혼퇴직은 안된다'고 말하기까지는 오히려 쉬워도 그 다음의 구체적 현실에 들어가면 어떤 태도와 대책을 세워야 할지 난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의보련의 예도 바로 그런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먼저 자세한 사정을 들어봅시다.

김진현: 의보련은 지금까지 단일사업장이었는데 최근 의료보험이 확대되

면서 지부가 생겼어요. 지부에서 의료보험을 관리하는 제도이니 가진 가야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올드(고참)'들만 보냈다는 점이지요.

이한순: '올드'는 전부 결혼한 사람입니까?

김진현: 꼭 그렇진 않지만 대개가 기혼이지요. 컴퓨터에 입사연도와 나이 등을 입력시켜 점수화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순으로 뽑았어요.

신운옥: 왜 꼭 여자들이 가야 하나요?

김진현: '심사' 업무가 많은데 이 일은 주로 간호원 출신이 하기 때문이죠.

사회: 지부를 설치했으니 누군가 내려가진 해야하는데 어떤 기준이냐가 문제가 되겠군요.

김진현: 회사측에서는 전 직원을 고루 보낸다는 순환보직제를 말하지만 저희들은 '파견식'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처음 당장은 업무가 손에 익지 않겠지만 6개월만 지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1차로 '심사' 파트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한 내려보내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인력을 수급하는 방안이지요.

이한순: 전 이 경우 일단은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려간 사람이 지내본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내야해요.

김진현: 하지만 지난 여름 노동조합이 생긴 이래 수개월동안 지부가 생기면 조합원을 먼저 보낸다고 으름장을 놓았거든요. 그래서 간호원 1백50여명

없애려면 진짜로 결혼 퇴직

- 사 회: 이경숙 (민우회 사무국장)
- 참석자: 이한순 (금융노동조합 여성부장)
- 김진현 (의보련 노조부위원장)
- 신운옥 (여성의 전화 간사)
- 때: 2월 2일 • 곳: 민우회 회의실

이 탈퇴하기도 했죠.

사회: 그렇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닌가요?

신운옥: 아니, 꼭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더라도 여성운동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전 생각해요.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내리는 지방발령은 그만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니까요.

사회: 남자들도 지방발령을 받으면 생활터전 잡기 어렵기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운옥: 경우가 다르지요. 남자들은 대개 승진의 한 과정으로 가니까요.

이한순: 얘기가 잘못 풀리다보면 자칫 여직원과 남직원간의 갈등으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면 숙직, 출장 같은 제도 말이에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얘기를 하다보면 대변에 부딪치는 반발이 '그렇다면 여직원도 숙직, 출장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주장 아닙니까? 모성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측면과 직업인으로서 동등한 몫을 해야한다는 측면이 갈등하게 되는 거죠.

신운옥: 지방발령을 받더라도 기혼 여성을 보내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사회구조적으로 설명해준다면 여직원 개인에게는 좋은 인식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김진현: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지요. 혹시라도 밀게 보여서 다시 서울로 못오면 어떡하나 하는 심리적 불안



물만 있으면 버티기도 하지만 양쪽 집안이 개입되면 건디기 힘들지요.

신운옥



결혼퇴직
싸움을
통해
자신의
이기심을
깨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김진현

이 상당해요. 이번에 저희도 처음에는 모두 가지 않겠다고 물었지만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나중엔 열댓명 정도가 남아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다들 '우리도 일단 가아겠다'로 흘렀어요.

사회: 어쨌든 당사자들이 일단 힘으로 보여준 건 성과라고 봐야겠지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수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김진현: 지부가 있다는 게 노조로서는 훨씬 유리한 측면도 있더군요. 광주 지부에 내려간 여성들이 며칠전 주말에 올라왔었는데 아주 유대가 강해졌어요.

사회: 은행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았을텐데요.

이한순: 초창기에는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려가곤 했읍니다. 75년 여성 국회의원들의 집중지원으로 모자보전법의 근거를 내세워서 다시 서울로 올라온 게 땀치음 극복사례인 셈인데...

신윤옥: 그전 상징적으로만 해주는 거 아닐까요. 지방발령을 받아도 견디내고 계속 다니는 사례가 많아져야 해요.

김진현: 저희 경우를 봐도 정작 본인들은 견디내려 하지만 어떤 남편들은 터미널에서 만나자마자 '이럴 걸 그만두라'고 하는 걸요.

신윤옥: 또 둘만 있으면 버티기도 하지만 대개 양쪽 집안에서 '웬 고생을 사서 하냐'고 나서게 되면 정말 견디기 힘들지요.

사회: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한 경우는 없을까요?

이한순: 노조에서는 고정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지만 워낙 여러가지가 얹혀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힘으로 버티내는 수밖에 없어요.

사회: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이를 지켜낼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대한부자신학 주소녀씨 사건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신윤옥: 너무 잘 알려져 있어 간단히 요약하자면, 주소녀씨가 86년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 책상이 없어져버렸어요. 매일 남의 책상에 앉으면서도 출근을 계속하자 회사측에서는 임신한 주소녀씨를 대전지점으로 발령을 냈고, 그곳에서까지 음으로 양으로 퇴직압력을 가했지요. 참다못한 주소녀씨가 우리 단체에 호소를 해와 '주소녀씨 결혼퇴직압력사건'에 항의하는 여성단체들의 움직임이 불붙게 되었고, 그 결과 주소녀씨는 서울 천호동 강동지점으로 발령이 났어요. 하지만 1개월만에 자진사표를 내야했습니다.

이한순: 왜 그만두게 되었나요?

신윤옥: 일단은 집과도 너무 멀었고 또 10년이상 해오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가장 나이도 많은데 왜 이 일도 못하느냐'고 추궁하기 일쑤였죠. 게다가 열친 데 달친 격으로 친정어머님이 돌아가시자 '모범은 보이고 싶지만 여기서 승복할 수밖에 없다'는 심정으로 그만두고 말았읍니다.

이한순: 그렇게까지 처절히 싸웠는데 그만두다니 정말 안타깝군요. 가장 큰 원인은 주소녀씨에게 같이 싸울 동료도 없었다는 점 아닐까요? 전 운동에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본인이 희생자가 되면서 싸우게 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운동력이 맞아떨어져 방향과 방향이 선 상태에서 적절 한 사례가 나와 운동이 불붙게 되는 경우지요. 주소녀씨의 경우 결혼퇴직문제를 여론적으로 환기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본인은 개인에게 쏟아지는 압력을 견디지 못한 희생자가 된 게 아닐까요.

신윤옥: 맞아요. 밖에서는 활발히 움직였지만 정작 회사 내부에서 주소녀씨는 고립되어 있었어요.

이한순: 그래도 주소녀씨 사건의 파급력은 굉장했어요. 지난해 제2금융권 운동이 아주 활발했었는데 그 주도세력이 주로 여직원들이었지요. 결혼하고도 다니는 게 최상의 관심인 여직원들에게 큰 사슬을 하나 풀어줘준 셈이었으니까요.

신윤옥: 전 주소녀씨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많은 걸 배웠읍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원인과 구조는 끊임없이 밝혀주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일정한 성과를 얻는 데 연연하면 절대 안된다는 걸 말입니다.

사회: 무엇이든 문제거리만 생기면 터뜨리던 식의 '여성운동의 문제제기적

이야기마당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이한순: 직장, 노동문제로 상담을 할 때도 무조건 상담하러 온 사람 편을 들어주고 복돋아주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김진현: 완전한 인간이 아닌 이상 다 나름대로 이기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상담을 오는데, 상담때는 자신의 그런 이기적인 의식들도 하나 하나 깨나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이한순: 전 해결방안중 중요한 것으로, 일단 여성들이 노조에 많이 참여해서 활동할 것을 권하고 싶고 또 사회적으로는 오는 4월 1일부터 발효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운동을 했으면 해요. 여성고용인을 결혼퇴직시키면 사용자 2백5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엄연하게 나와있거든요. '결혼퇴직중용은 범죄행위'라는 걸 널리 알려 사회분위기를 압도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의보련의 경우도 일단은 사표를 내지않고 버티는 게 급선무예요. 자리가 잡히면 노조 같은 데서 지방근무 순환보직제에 대한 양케이트를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사회: 여성들의 평생직장이 사회전체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첫째 전체문제를 보는 시각이 갖춰져야 하고 둘째 그 시각을 끝내 실현시켜낼 구체적 물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년내내 타이프란 치는 단순업무로는 아무리 평생직장을 강조한들 '어서 결혼해서 이 일을 그만두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좀더 책임있는 일로의 승진, 승급을 따내는 일, 그런 물적 뒷받침을 이뤄내는 일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은 특히 그러한 운동의 시작과 방식을 철저히 당사자의 입장에서 풀어가야 한다는 점, 구체적 개인에 대한 애정과 전체 여성운동의 흐름이 결합되어야만 참 운동으로 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결혼퇴직을
거부하는
여성이 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운동이
필요해요.

이한순

“오죽하면 10년 기다려온 보험증을 반납하겠습니까?”



2월 10일 무안군 장터에서 열린 '현행'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무안여성농민대회

88년 1월 1일부터 전국 1백34개군 8백26만명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됐다.

지난 77년 5백명 이상 사업장의 직장 의료보험실시를 선두로 한 우리나라 의보사업은, 시행하기 수월한 중상류층부터 착수, 전개되어왔다. 이 때문에 정작 의료보험혜택을 받아야 할 농어민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고작 10년 세월동안 의료보험 실시를 간절히 바랬었다.

10년 기다림 끝에 받아온 의료보험카드, '돈 때문에 죽는 꼴은 안봐도 되겠구나.....' 싶어 희망에 부풀던 농어민들은 그러나 막상 날아온 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그 컸던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져내림을 느끼고 있다.

“식구수가 많다고 보험료가 많아지면 가난뱅이 대가족은 어떡하느냐”

“1년 내내 병원비, 약값 다 합해도 2만원을 안쓰는데 내가 왜 달마다 2만원씩을 내야하느냐”

농어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의료보험조합이 일방적으로 세운 기준에 따른 비싼 보험료는 농어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만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 I 보험료 만원을 내는 도시근로자와 농민의 소득비교

	도시 근로자	농민(경기도 화성군 4인 가족 경우)
월급 또는 월소득	월급 54만원	월소득 9만원 논 3000평×300원(논평당년소득)=90만원 밭 1000평×180원(밭평당년소득)=18만원 년 108만원÷12개월=월소득 9만원
보험료 계산	월급 54만원×3.8% =20,520원 본인부담 반(50%) =10,260원	1. (년 108만원) 소득비례등급 2,500원 2. 재산비례 (고시가 평당 5,000원) 논밭 4,000평×5,000=2,000만원 (11등급) 3,700원 3. 세대당 기본 1,000원 4. 가족 1인당 700원×4명=2,800원 1+2+3+4=10,000원

의료보험실시 한달이 지난 지금 농민들은 누구를 위한 보험이며 복지정책인지를 반문하며 보험증 반납과 인근 도시로 주민등록 주소지 옮기기에 이어 의료보험시정을 위한 쟁기대회와 서명운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벌이기에 이르렀다.

공무원·직장근로자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농어민들의 가장 큰 불만인 걱정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보험료 때문에 논밭 팔게 생겼다”고 한숨 짓는 농어민들의 보험료부담은 일반 도시근로자와 비교하더라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I에서 보듯 54만원 월급을 받는 도시근로자와 월소득 9만원의 농민이 똑같이 보험료 1만원을 내야한다. 월수입 9만원의 도시근로자인 경우 보험료는 1천7백10원에 불과해, 같은 수준인데도 1만원을 내야하는 농어민들이 열

마나 부당한 점을 짚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농어민의 보험료가 이처럼 높게 매겨진 것은 도시근로자나 공무원이 보험료의 50%를 사용주나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데 비해 농어민들은 정부에서 조합의 운영비·직원 임금 등을 포함해 35%만을 보조해주는 데도 그 이유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부당하게 책정된 복잡한 산출기준과 방법에 문제가 있다. 공무원·도시근로자는 재산·가족수에 관계없이 월급에 대해서만 일정률의 보험료를 내면 되지만, 농어민들은 ‘세대당+가족수당+소득비례(15등급)+재산비례(15등급)+ 기타 소득(5등급)’을 보험료로 낸다.

그림 II에서 보듯 농어민들은 각종 과세자료 등 5가지를 합한 총액수를 내야 한다. 재산세를 따로 내고 있는데 또다시 재산 비례가 보험료 산출 근거가 되

그림 II 보험료 산정 방법

도시 근로자	농민(경기도 화성군 4인 가족일 경우)
근로자 1인 월급의 3.8%	① 재산에 따라 논밭을 합쳐서 평당 50,000원 (정부고시가)
	② 소득에 따라 논: 평당 1년소득 300원 밭: - 180원
	③ 세대당(기본) 1450원 중 450원 정부보조 1000원 농민부담
	④ 가족1인당 1000원중 300원 정부보조 700원 농민부담
	⑤ 기타소득 가족등의 기타소득
총보험료증 받은 근로자부담	①+②+③+④+⑤=농민총부담 보험료
총보험료증 받은 기업주부담	

며 세대당, 가족수당을 따로 내야하는 것도 부당하다. 더구나 월 소득자가 아닌데도 매달 보험료를 내야되는 것과 연세료와 차압 등 강제징수당하는 것도 문제다.

의료보험조합은 이처럼 농어민의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1등급~15등급으로 나누어 차등부과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농어민의 실제 재산 특히 음성적인 부분 등은 파악이 어려워 사용된 자료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실제 잘사는 사람이 못사는 사람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거나 비슷한 소득 수준의 농가인데 보험료가 큰 차이가 나는 현실은 '근거없는 보험료 산출방

식'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의료보험료는 또 하나의 농가부채

충북 음성군에서 농사를 짓는 김모씨(48세)는 4년간 써온 영농일지 겸 가계부를 이번 기회에 살살이 분석해보았다. 김씨와 아내(48세), 장남(23세·군복무), 차남(20세·학생), 장녀(18세·학생) 등 5식구인 이 집은 논 2천3백평, 밭 9백평의 자작농가이며 자기집을 가지고 있다.

김씨네에 부과된 의료보험료는 9천1백원(88년 1월분). 이에 비해 김씨네가 4년동안 쓴 1달 평균 의료비는 3천4백88원(약국 이용 제외하면 1천21원)이다. 김씨는 한달 평균 적자가 11만원인

기획/농어촌 의료보험

지금 형편으로는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 9천1백원이 곧바로 빚으로 직결된다고 불노하고 있다.

불편한 병원진료, 불공평한 보험혜택

이처럼 비싼 보험료를 꼬박꼬박 물고 보험카드를 가진다 해도 농어민은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1차 2차 3차 병원이 이미 지정되어 병원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 1차진료는 그 지역의 생활권안에 있는 보건진료소나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해야하며 2차진료는 1차진료를 했던 보건소나 병·의원 등에서 '가야한다'는 의사소견서가 내려질 경우에 한해 인근 지역의 시·군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또 3차진료는 2차진료에서 의사가 소견서를 써준 경우 대도시의 종합병원에 가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제도로 인해 대학병원 등 큰 병원에 먼저 갔을 경우 의사가 1차나 2차 진료에서도 고칠 수 있는 병이라 판정하면 대학병원에서 받은 모든 검사료와 진찰료는 보험혜택을 못받게 된다. 또한 착실히 1,2,3차 순서를 거친다해도 가는 병원마다 접수비, 검사비 등을 새로 내야하니 보험혜택이 있어도 돈들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과 아울러 의료보험조합의 구성과 운영을 둘러싸고 갖가지 잡음이 일고 있다. 군단위마다 만들어지는 까닭에 조합의 관리운영비가 엄청나게 들며 실제 주인이어야 할 농어민은 제쳐둔 채 '실력자'들이 대표이사 자리다툼만 하고 있다.

조합의 실제 운영은 각 읍·면의 대표인 운영위원들에 의해 이뤄진다. 하지만 농어민도 모르는 사이에 운영위원은 이장회의 등에서 선출되고 마는데 주로 민정당 간부나 전직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임명되어 논공행상의 성격이 짙게 풍기는 것이다.

지금 농어민들은 통합주의로 전국을 일원화시켜 소득수준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토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농어민 자녀들의 원격지 보험혜택과 국고보조를 50%로 올릴 것 등 미봉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런 대책은 구멍난 곳 땀질 식의 효과밖에 안된다.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의료보험혜택을 스스로 거부하는 농어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그들이 제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부가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외면해버린다면 농어민들의 의료보험법 개정운동은 건잠을 수 없는 불길로 번져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주의를 주장한다

조홍준 (의사·충북 음성군)

농어촌의보가 실시된 지 한달이 지난 지금 맨처음 보험료고지서를 보고 놀라던 농어민들의 분노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되어 체계적인 의료보험법 개정운동으로 틀이 잡힌 것 같다.

의료보험실시 당시부터 논란이 분분했던 '통합의원주의'와 '조합주의'가 이제 또 등장하게 된 것이다.

조합주의란 지역이나 직종별 등 동일한 조건에 놓여있는 곳을 묶어 자치운영토록 한 방식인 반면 통합주의란 지역이든 직종이든 하나로 묶어 전국을 하나의 보험권 아래에 두는 것이다.

의료보험의 참 목적은 '소득의 재분배'와 '위험의 분산'이다.

질병위험이 높은 층은 보험을 통해 그 위험을 낮은 위험층으로 분산시키고 대가족의 높은 의료혜택은 소가족의 낮은 이용으로, 노인층은 젊은층으로, 가난한 계층은 부유한 계층으로... 등등 질병위험과 의료이용률을 분산시킴으로써 각 계층 및 그룹별 평균비용부담이 가능해지며 이것이 곧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사고에 대한 위험가능성을 일률적인 관리로 분산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을 얻고 간접경비를 절감한다는 주장이 통합의원화이지만 정부는 이를 반대, 조합주의를 선택해 추진해나왔다.

반대이유는 첫째, 농어촌의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수진율이 낮으므로 농어민이 도시민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소득의 역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둘째로 농어민의 소득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므로 통일적 보험료 부가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것. 셋째, 국가 발전 추세에 지방자치, 민주화를 지향하므로 통합의원화방식은 시대착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합의원화를 주장해온 학자나 농어민들은 행정처리상의 사소한 불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첫째 의료기관의 부족은 앞으로 의료기관의 확충 등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농민의 수진율이 낮은 것은 그에 맞게 보험료 부담률을 더 낮추면 된다.

둘째 소득 산출방법이 힘들다고 농어민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행정가들의 직무유기다.

셋째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는 정부의 통제기능이 강화되면서 점차 전 국가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보험에서 분권화를 주장할 수는 없다. 민주화없이 자치화가 가능한 일인가!

결국 이번 농어촌지역 의보 역시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 없는 가운데 그 부담을 농어민에게 전가하면서 동시에 사회보장제도 실시의 명분만을 취하려는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만남/나주 수세거부운동에 앞장선 송정례씨

광주에서 나주 터미널까지 30분, 다시 때마침 조합장직선제 요구로 북적대는 봉황면 가톨릭농민회지역위원회 겸 수세거부대책위원회 사무실을 거쳐 전남 나주군 봉황면 옥산리 인읍에 사는 송정례씨(41)를 만났다.

버스를 내려서도 20여분 걸어 들어가야 하는 송씨집 대문에는 '못내 못내 절대 못내 부당수세 절대 못내' 예의 노란색 스티커가 2개나 붙어있었다. 마침 함께 밀떡을 빻던 아주머니 세 분이 '수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일제히 반색하며 붓물 터뜨리듯 말문을 뜬다.

"그전에는 촌사람들이라 누구한테 말할 줄도 모르고 내라는 대로 다 냈제. 기한내에 안내면 차압 들어온다, 할증세 붙는다 하는 통에 말어"

그러던 수세-정식명칭은 농지개량조합비-가 작년 가을부터 '내지 말아야 하는 돈'으로 바뀌었다.

"수세의 역사를 생각했제. 알고보니 옛날 조상때는 수세가 없었다고 하더라. 일본놈들이 우리 뜰에가려고 물세를 만들었다는 거여. 아니, 일본놈도 갖는데 왜 아직껏 받아먹는단 말어"

지금 우리나라에는 농지개량조합이라는 게 있어서 논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동관리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원래 '조합'이라고 하면 농민들의 자치적인 조직이 돼야 하는데도, 5·16이후 '잠정조직'이 만들어져 총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야 만들수 있고 조합원 임원 선출도 당분간 농수산부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버렸다. 아직은 농민들이 자치적으로 꾸려갈 수 없기에 2년 정도 정부가 도와준다는 게 당시의 명분이었지만 그후 2년은 커녕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잠정조직'은 계속되고 있다.

일년에 한번씩 나오는 수세는 한가구당 10만~30만원씩. 조합운영비의 90%를 농민이 내지만 정작 수리비에 쓰이는 건 40~50%다. 전국적으로 4천명이나 되는 조합직원 인건비에 나머지 돈이 다 투입되는 셈인데 조합직원은 거의 정부·여당이 임명하고 있다.

"철도나 길, 항만 같은 건 다 정부사업으로 해주는데 왜 유독 물길만 농민한테 떠맡기냐 말어. 정주영 같은 이는 울산에서 배 만드는데 자기 돈 들여 항만 짓는당가. 농사를 지어야 국민이 먹고 살제, 생명 산업인디"

농민들은 농지개량조합을 해체하고 일본이나 대만처럼 수리청 같은 관청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한번 터져버린 분노와 깨달음은

“ 못내 못내 절대 못내 부당수세 절대 못내”

곧 면단위 읍단위 수세거부대책위원회를 만들어내게 되었고 마침내 12월 25일까지의 납부기한을 넘긴 채 12월 29일 나주 천주교회에서 '나주·광산 부당수세거부 농민대회'를 열었다.

"이 마을 여자들도 성탄절날 장터에 가서 유인물을 뿌렸제. 난 유인물 뿌리면서 막 떠들었어. 수세는 안내도 된다. 수세 안내려는 자들은 다 천주교회로 모이라고 말어"

마침내 29일, 일찍 천주교회 문턱에 나가섰다는 송씨는 당시를 설명하며 '어찌나 기쁘고 재미있던지'를 몇번이나 반복했다.

"생각보다 오지게 사람이 많이 오는 거여. 나주면이 2만명인데 1만명쯤 모였으니까. 두루마기 차려입은 영감님들, 아주머니들, 애기들까지 구름같이 몰려와서 시위하고 노래 부르고 그랬어. 수세고지서를 전부 거두니 두 푸대야. 이걸 갖고 새파랗게 칠된 조합장을 밑에 세우고 대책위장이 위에 서서 '전달식'을 했제. 이거 못내겠다고 말어. 사람이 많으니까 경찰도 차마 막을 생각을 못했어"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직원들에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 말을 들어야지" 옥박지른 끝에 다시는 수세 받으려 다니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내고 만세삼창을 끝으로 대회를 마쳤다. 11시에 시작해서 오후4시에 끝났는데 점심때가 지났지만 아무도 배고픈 줄 몰랐다고.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너무 시달려왔으니까 다 악만 남은거여. 한풀이여 한풀이"

송씨는 가톨릭농민회의 회원이다. 4년전 처음 동네분의 권유로 교육에 갔었는데, 마을 회장수녀도 '거기 가면 정



카메라앞에 한동네 여인들과 같이선 송정례씨 (가운데)

역산다'고 말리는 바람에 '그나저나 가보자'며 몰래 갔었다. 이것 저것 많은 얘길 들으면서 '알아야 쓰것구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86년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했고 지금은 이 마을 5명의 여성이 뚝뚝 뚝쳐 남을 엄두내지 못하는 일을 척척 해내고 있었다.

"하나씩 해결을 해나가다보니 이제 실오라기 풀듯 재미있고 힘나는 거여"

이들의 '막걸리사건'은 봉황면 전체에 유명해진데, 공무원들이 종전의 통막걸리 대신 비싸고 이윤이 많이 남는 병막걸리로 바꿔버린 데 반발, 국세청에 질의서를 낸 사건이었다. 알고보니 '주민이 원해야만' 병막걸리로 공급한다고 되어 있었다. "잘못 했으니 용서해 달라"는 세무서 과장들의 애원과 함께 당장이 마을엔 병막걸리가 다시 들어왔다. 86년 대학생들이 농촌활동을 내려왔을 때도 관리들과 알음알음한 남정네들은 압력을 받아 학생들을 보내버리자고 했지만 여자들이 나서서 농촌활동을 계속하게 했었다.

"해보니까 여자들도 남자보다 못할거 없대"

시부모, 아이들 넷, 남편, 이렇게 대식구로 사는 송씨가 어떻게 멀리 대전까지 교육을 받으러 가고 농민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어른들이 반대 안하시냐는 질문에 지금껏 말없이 떡을 빻던 아주머니 한분이 대신 대꾸했다. "내가 시어미여"

모두가 한바탕 웃어제끼니, 송씨는 이번 수세 싸움은 정말 그 수많은 농촌 문제중 방산의 일각일 뿐임을 꼭 알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니 워낙 이렇게 운동하는 걸밖엔 살 길이 없으니까, 어른들도 다 협조를 안할 수 없게 되었제"



지난해 6월 항쟁 이후 각 사업장마다 민주노조예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의료계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에 노조가 설립되어 일반인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노조원들의 단체행동은 곧 환자들의 피해'라는 식의 일부여론이 병원노조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도록 했던 것.

하지만 병원이라고 이땅의 노동현실과 무관할 리 없다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7월 31일 서울대학교병원 노조 설립을 선두로 지금까지 전국 80여개 병원에서 노조가 속속 결성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각 병원 노조는 병원측의 반발과 갖가지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에 대처함과 동시에 노조의 뿌리를 탄탄히 박아야 하는 신생노조로서의 공통적 어려움을 나누고 힘을 합치기 위해 전국적 연대기구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이름하여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병노협이라 칭함).

전국 5백40개 병·의원중 77개 단위 노조로 구성된 병노협은 87년 8월부터 준비에 들어가 12월 12일 창립대회를 가졌다.

창립된 지 두달이 채 되기도 전에 서울대병원 농성, 새광병원 농성, 한양대 부속병원 농성에 이어 현재 부천제일병원 농성을 지원, 연대 싸움을 벌이고 있는 병노협의 활기찬 시작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대부분 새로 생긴 노조들이라 경험과 조직력이 약하고 단위 병원 자체로는 힘이 없었습니다. 전국 병원 노조간의 굳건한 연대로 정보 및 경험을 나누고 서로 지원활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에 병노협을 만들었습니다"

병노협 의장이자 이대부속병원 노조

“병노협이 사는 길은 굳건한 연대뿐”

위원장인 양건모(27)씨는 병노협 결성은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사무실'이란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이대부속병원 직원식당의 한구석에 칸막이를 쳐놓은 공간. 이곳이 이대부속병원 노조사무실인 동시에 병노협 임시 사무실이다. 점심준비를 하는지 음식냄새가 코를 찌르는 가운데서도 노조임원들은 서류정리와 인쇄업이 걸려오는 전화받기, 회의 준비 등에 여념이 없었다. 급급이 마련되는 대로 병노협사무실을 따로 가질 계획이라며 활짝 웃는 양의장은 1년의 의장 임기동안 병노협 조직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사실 병노협은 전국적인 연대기구라 결성하기까지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단위 노조 자체가 힘이 없는 상태에서 연대모임은 시기상조라는 반대도 일부 있었지만 힘을 합치는 동시에 단위노조를 조직화하는 작업을 동시에 하자는 주장이 결국 이겼지요"

이와 아울러 기존 병원노조(세브란스병원·원주기독병원·국립의료원)와 신생 병원노조가 일치될 수 없는 요소가 다소 있어 갈등을 겪기도 했단다. 즉 신생노조는 그동안 병원측과의 사이에서 쌓여온 숙한 문제점들로 인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였고 기존노조는 업무를 해가면서 서서히 개선해나가는 주장을 펼친 것.

"결국은 서로 갈등을 극복했습니다. 그만큼 연대의 필요성이 절실했던거죠. 이제 한몸 공동체가 된 만큼 서로의 입장이 융화되어 더욱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전국 15개 병원에서 선출한 30명이 실무소위원회를 구성, 4달간 집착을 가지면서 준비를 해나갔다. 양의장은 막

만남/병원노조협의회 의장 양건모씨

중한 책임을 짊어진 이들 실무위원들이 야말로 밤12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 본적이 없을 정도로 일에 매달려 하루빨리 창립대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공로자들이라고 설명한다.

병원노조들이 결속을 다지는 데 적극적이었던 이유중의 하나는 의료기관이라는 직장의 성격상, 다른 사업장과 달리 특수한 노사문제를 안고 있다는 공통점 때문이기도 하다.

"흔히 병원은 높은 보수, 좋은 환경에서 일한다고 알려져 있어, 무슨 노조가 필요하냐고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밤낮이 뒤바뀌는 불규칙한 근무시간, 감염위험, 장시간 노동에 십여만 원밖에 지급되지 않는 월급, 수당도 없는 연장근무 등 노동자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게 병원종사자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본권 요구에 병원측은 한결같이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 결국 최후수단인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여론은 '과격하다, 무책임하다'로 몰렸고, 한양대부속병원 농성때는 강력 대처하겠다는 정부발표까지 있었다.

"편파, 왜곡된 여론이에요. 파업, 농성 중에도 최소한의 업무를 보았고 끝까지 싸우라는 환자들의 격려도 많았어요. 퇴원강요,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 위장폐업 등을 저지른 병원측은 진료를 거부한다는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려 했어요. 누가 더 무책임한지 눈을 크게 뜨고 명확히 봐야합니다"

병노협은 현재 교육활동, 조직활동, 조사·연구활동, 문화활동, 홍보활동, 상담활동, 여성부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설립후 지부구성과 공동신문 제작, 임금비교표 작성 사업도 진행중에 있다.

85년 3월부터 이대부속병원 약제과에 근무해온 양건모씨는 기죽어 있던 병원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을 하면서 올바르게 생각하면 곳곳이 밀고 나가는 변화된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있다고 말한다.

때마침 사무실에는 부천시가 동원한 폭력배가 농성중인 부천 제일병원 노동자를 폭행했다는 보고가 속속 들어오고 있었다.

"이것이 어디 제일병원만의 문제겠습니까? 전 병원노동자가 연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가야지요"

양씨는 병노협을 널리 알려달라는 부탁을 하며 바쁘게 일어섰다.

얼마전 신문을 보니 한 조사결과가 눈에 띄었다. 거기에는 요즘 젊은 남편들은 장보기나 설거지, 혹은 식사준비에 이르기까지 '아내를 도와' 가사에 참여하는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소개되어 있었다.

나이 많은 분들이 그 기사를 봤다면 '세상 달라졌다'고 격세지감을 느꼈을 테지만 그 신문기사를 보는 자리에 마침 같이 있던 젊은 여성들의 반응은, '아내를 도와'라는 표현부터가 거슬린다. 남편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 정도로는 너무나 부족한 것 아닌가 라는 것이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남녀평등과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라는 주제에 대해서 새삼 생각해 보게 되었다.

'집안일은 모두 반드시 아내의 일이며, 남편의 일은 바깥일'이라는 남녀역할의 고정화를 깨는 것이 여성운동의 한 목표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좀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역사적 필연이라고까지 할만하다. 더구나 사정이 직장여성들인 경우에 이 주장은 너무나 정당하다. 오히려 이 당연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많은 직장여성들이 가사노동과 직장노동의 이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아내노릇을 좀더 착실히 못하고 있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남편은 그야말로 기분이 내킬 때 좀 도와주는 수준이지 결코 가사의 한부분이나마 책임지고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서 젊은여성들이 이런 현실의 부당함에 불개하고 '아직도 대부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백번 옳다고 수긍하지만, 그냥 넘어가버리기에는 뭔가 찝찝한 구석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아마도 두가지 문제점이 머리에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하나는 남편과 아내의 철저한 가사노동 분담 요구가 자칫 너 하나 나 하나, 너 둘 나 둘 식의 기계적 분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귀착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는 이런 열려가 터무니없는, 그야말로 없는 사실에 대한 가상의 열려인 것으로 비칠 것이다. 그러나 일이 가다보면 방향이 그쪽으로 도는 수가 없지도 않다는 것을 서구의 여성운동이 보여주고 있다. 서구의 여성운동이라고 해서 모두가 한 방향, 한 목소리가 아니므로 전부는 결코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집안에

연탄갈기와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이지은 (『함께 가는 여성』 편집위원)



가사노동에 얽힌 여성의 고통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꼼꼼히 분석해 보면 그 태반이 사회적 원인에서 오는 것일 때가 많다. 오히려 남편의 참여는 미봉책 정도에 그치는 수가 허다하다. 그런데 사회적 원인은 물론 채 보이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남편의 무관심, 이기적 태도 등이기 때문에 불만이 남편에게 집중된다.

서의 남녀역할의 분담을 강조한 나머지 기계적 분담요구로 귀착되어 결과적으로 융통성도, 애정도 사그라들고 차가운 합리성만 추구하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또하나의 문제는 가사노동을 둘러싼 여성운동의 요구가 과연 남편의 참여 수준에만 그쳐서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가사노동에 얽힌 여성의 고통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꼼꼼히 분석해 보면 그 태반이 사회적 원인에서 오는 것일 때가 많다. 오히려 남편의 참여는 미봉책 정도에 그치는 수가 허다하다. 그런데 사회적 원인은 물론 채 보이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남편의 무관심, 이기적 태도 등이기 때문에 불만이 남편에게 집중된다. 남편은 남편대로, 치열한 생존경쟁의 장에서 이리저리 치이다 파김치가 되어 온 사람에게 또 가사의 분담이라니 말이나 되느냐고 아내더러 이기적이라고 공박하게 된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주부들, 특히 대가족이거나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는 직장노동보다 오히려 중노동일 수도 있

는데 남편들에게는 집에서 그냥 있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에 더욱 갈등은 심화된다.

이런 상황은, 비유하자면 거대한 벽 앞에서 희생자들끼리 싸우는 꼴이 아닐까? 서로 싸우기보다 벽을 향해 구멍을 파는 것이 빠른 길일 것이다. 물론 벽이 금세 허물어질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도 희생자들끼리는 살아가야 하므로, 그리고 진정으로 힘을 합쳐서 벽을 잘 허물기 위해서라도 희생자들 사이의 불평등—가사노동을 둘러싼 남편과 아내의 불평등—은 평등의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얼마간의 싸움은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온전한 해결은 벽이 허물어졌을 때라야만 가능한 것임을 잊는다면 희생자들간의 싸움은 끝없는 갈등으로 시종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 내 친구에게서 들은 경험이 하나 떠오른다. 지금은 기를 때는 아파트로 이사하여 연탄갈기에서 해방되었지만 얼마전까지 주택에 살 때는 연탄갈기가 꽤 힘든 일과중의

하나였다는 것이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더욱 그렇다. 그 집은 외풍이 심했으므로 방바닥을 뜨겁게 달구어 방뜨거운 맛으로 추위를 덜고 지내야 했다. 그러자니 화덕 불문을 활짝 열어야 했고, 자연히 한겨울에는 거의 5시간마다 연탄을 갈아야 했다. 이런 경우 횡수도 갖고 시간 맞추기가 고역이다. 낮에는 그렇다치고 밤에는 더욱 힘들다. 이게 늦어도 10시쯤이라도 갈게 되면 졸으려면 흔히 12시를 넘기기가 일수였다. 따스한 구들목에 엎드려 있다가 찬바람 땀방울 부는 바깥에 연탄집게 들고 나설 때의 귀찮고 쓸쓸한 느낌이 그야 누구나 알겠지만 그나마 불이 많이 남아 있어 도로 들어가야 할 때는 정말 한심하다. 불이 별것처럼 남아있어 안떨어지는 탄을 억지로 떼어 갈아 버리기도 하고, 그것이 찢절해서 좀 있다 나오지 하고 들어갔다가 그대로 자버려 아침이면 번개탄을 동원해야 하는 것 등……。 그러다 보면 연탄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살고 있는 남편이 미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고 자연히 아웅다웅 다투기도 잦았다는 것이다.

그래도 연탄 자체가 어떻게 달리 생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한해 겨울에 강원도의 절에 가서 며칠을 보낸 적이 있었다. 탄광촌이 근처에 있는 절이었었는데 난방을 연탄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연탄 불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10시간씩 타는 것이 아닌

가? 10시간이라면 밤 10시에 잤어도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끄떡없다는 소리가 아닌가? 한마디로 연탄의 질이 서울의 연탄과는 비교가 안되게 좋은 것이었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저질 연탄을 만들어 낸단 말인가? 그렇다면 연탄갈기에 시달린 끝에 남편에게 안 갈아준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연탄회사에 대고 연탄의 품질을 높여 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 아닌가

수많은 주부들이 오늘도 연탄 때문에 밤늦게까지 자지 못하고, 무능한 남편, 도와주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남편과 다투기 전에…….



하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남편에게도 항했던 불만—왜 빨리 돈을 벌어 아파트로 이사하지 못하는가라는—이 많이 사그라지고 왜 연탄이 저질로 나오게 되는가에 좀더 관심이 돌러 지더라는 것이다. 연탄회사의 이윤추구책만 아니라 우리나라 석탄의 질 저하 문제, 주유종탄(主油從炭)정책의 문제점, 에너지정책 등이 전부 이 문제와 연관이 있어 있음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되었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못해도 적어도 가사노동의 고통과 사회문제가 맞닿아 있음을 실감했다는 것이었다.

수많은 주부들이 오늘도 연탄 때문에 밤늦게까지 자지 못하고, 무능한 남편, 도와주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남편과 다투기 전에 이들 여성들이 목소리를 합쳐 연탄문제에 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보태져야만 여성운동이 온전한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닐까?

비단 연탄에 국한된 얘기는 아닐 것 같다. 가사노동에 얽힌 고통의 해결은 사회적 조건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남편의 참여로만 풀려고 하는 것은 문제의 반쪽 해결밖에 추구하지 않는 것이 된다. 양자는 반드시 결합되어야 하고, 우선 순위를 말하자면 오히려 사회적 요구가 더 먼저가 아닐까? 그렇지 않고 남편에 대한 요구만 한다면 여성운동의 영역을 축소시켜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지 경계해야 할 것 같다.

날 말맞추기



(가로열쇠)

- ① '대한민국 만세 / 만세 / 만세 / 만세'를 외치면, ② 사람의 움직임을 느낄만한 자취와 소리, ③ 무우를 통으로 넣고 국물을 많이 부어 삼삼하게 담은 김치, 연탄가스 마시면 이 국물을 마시면 하조, ④ 애화, 난조, 국화, 대나무를 소재로 그리

는 동양화, ⑤ 개인의 능력과 성실보다는 학교를 입학이 인정되는 사회를 흔히 ○ ○ 위주의 사회라 하죠, ⑥ 옛날 우리의 선조들이 정성을 들일 때 사용했던 물, 이른 새벽에 깊은 우물물, ⑦ 이 새가 울면 빈가는 손님이 온다고 하죠, ⑧ 물에 새알을 넣고 달인 후 설탕, 꿀, 꽃감을 달가 짓, 계피를 넣어 만든 우리 고유의 음식, ⑨ 상아는 이 동물의 특별히 길고 큰 앞니 두 개, ⑩ 나라를 지키는 방패와 성, ⑪ 엉거서 몸치 딱딱하게 되는 것, ⑫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 농가에서 식량에 가장 고통을 받던 고비, ⑬ 동서남북, ⑭ 죽는 힘을 다해 지키는 것, ⑮ 글로써 일정한 사상을 적어 표시한 것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 양이나 집에 대한 권리 양도 때 필요한 것, ⑯ 한국의 지붕, ⑰ 이것이 옳으면 주부님들은 가계부와 싸움하게 되죠, 이것이 인정되어야 경제도 안정된다고 합니다.

(세로열쇠)

- ① 아주 많은 사람, 모든 사람, ② 백년을 단위로 하여 연대를 세는 말, 우리는 20○○에 살고 있죠, ③ 어린 아이, 아주 얹거나 당당한 사실을 알고 있을 때 흔히 '○○○○도 다 아는 사실'이라는 말을 하죠, ④ 해방후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의 시대, 여전히 미국의 보호아래 전일파와 해방지주가 판지된 세상이었죠, ⑤ 역사학, ⑥ 군부를 중심으로 한 큰 세력에 의해 형성

지는 정치, ⑦ 이유 원인, ⑧ '머리 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알쏭달쏭, ⑨ 자신이 지은 선과 악에 용하여 그에 대한 보답이 있는 것을 이르는 불교 용어, ⑩ 이곳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지요, ⑪ 역문이 없도록 돼지머리되어 불고신랑 남매 비는 제사, ⑫ 미국은 계속 우리의 모든 품목, 모든 업종에 이르기까지 압력을 가하고 있죠, 경제의 자립화를 빨리 이루어야하는데……, ⑬ 박정철군의 목숨을 잇어간 ○ ○ ○ / 전살은 밝혀졌죠, ⑭ 억울한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글, ⑮ 옛날 신부가 시집갈 때 타고 간 신부 전용 자가용, ⑯ 수염없는 사람을 맥주병, 수영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 ○ ○ / 아시아의 ○ ○ 조오현 선수.

(지나호 정답)

- 정답은 다음호에 실립니다.
2월 25일까지 접수된 정답을 추첨, 그중 다섯분에게 6개월치 신문료 무상 혜택을 드립니다.
● 지나호 정답자는 제주도 제주시 용담2동 2713-15 이경문씨입니다.

무	진	년	민	주	노	조
위	성	화	권	송		
도	독	리	운	명	비	
식	연	휴	동	설	범	
현	가	마	탁	밥		
한	겨	려	미	어	리	
울	간	수	소	구		
양	담	배		부	정	

여직원회 '메아리'가 압력단체로

김현자 (조흥은행 업무개선실)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한 목소리가 널리 퍼져 나가라'는 뜻인 우리 '메아리'가 만들어진 것도 벌써 10여년전의 일이다. 그때만 해도 겨우 22명의 여직원회원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 '조흥은행 서울·경기지구 여직원 모임'으로 발전되면서 전체 여직원의 3분의 2인 2천여명의 대식구를 거느리게 되었다(그 중 3분의 1은 기혼여성이다).

회원가입은 자발적이며 때론 의식있는 여직원이라 하여 주위에서 추천되어 들어오기도 한다. 회원으로 가입되면

급여시에 자동적으로 월 5백원의 회비를 낸다. 아마 금융계통의 여직원회중에서 규모도 제일 크고 가장 조직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배들의 싸움과 노력이 없었으면 오늘은 없었을 것이다. 직장내에서의 권위주의와의 싸움, 남녀간의 임금차별, 각종 차별대우에 대한 싸움, 여성들 스스로의 나태한 직업관과의 싸움.....

노조가 일종의 경제투쟁을 담당하여 직원들의 권익을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메아리회'는 여직원들의 순수한 친목도모 모임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노조위원장조차도 메아리회 회장이 찾아오면 "압력단체 양반 오시는구먼"하고 농담할 정도로 노조나 회사측에 조언과 비판을 하면서 여직원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노조위원장 선출때는 무엇보다도 '메아리회'의 힘이 강력하게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 후보의 연설을 녹음해서 내용을 분석하기도 하고, 후보들에게 공약을 꼭 이행하겠다는 각서까지 받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대의원의 40퍼센트를 차지하는 여성대의원들에게 "바지 입은 사람 밟지 말고 치마 입은 여자가 원하는 사람을 밟아달라"며 여성문제를 올바르게 보는 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던 것이다.

그것은 몇년전 우리가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가 노조위원장이 되면서 여직원 문제를 거론하기만 하면 "밀어주지도 않았는데 왜 들어주냐"는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만

큼은 여성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가지도록 여성의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여직원회 임원들이 며칠밤을 꼬박 새면서 '운동'한 결과 결국 새 위원장은 '메아리회'가 지원했던 사람이 당선되는 기쁨을 맛보았다. 그 후 노조임원중 여성이 한명 더 늘어났고 여직원들의 문제 해결도 노조와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고 멈출 수는 없다고 본다. 아직까지 같은 회사의 여직원이라해도 요구사항들이 너무 다양하다. 예를 들면 '카레일 감습'을 하자는 데서부터 '노동법 강의'를 하자는 데 이르기까지. 이러한 각양각색의 요구들을 수렴해 나가면서도 좀더 바랍직한 여성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껏 많은 개선을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여성들에 대한 편견과 부당대우, 여성들 자신의 안일한 의식들과의 싸움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작년 5월 여직원회 신문을 창간한 이후 시간상 어려움으로 계속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은행의 지방과 서울 각 지점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지속적인 신문의 발간은 시급한 과제중 하나이다.

비록 현재 우리 '메아리회'의 몸짓은 작다할지라도 결국 '좀 잘 살아보자'는 인간적 욕구에서 뿜어진 것이기에 이러한 작은 몸짓이 모여 커다란 울림이 되어오리라 믿는다.

이런모임

농민을 위한 병모금

광화문 구세군회관 한 따뜻한 온돌방안, 여기저기 빈 병이 어지러져 있고 서너명의 손길이 빈 병에다 스티커를 붙이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농민을 위한 병모금'

이렇게 모은 병을 팔아 언제 돈을 모으냐는 질문에 모두 박장대소한다.

"그게 아니고 이 빈 병 속에다 돈을 모으는 거예요. 한꺼번에 큰 돈을 내놓지는 못해도 늘 일상적으로 문돈을 모으자는 취지지요"

'자식들만큼은 지금 우리보다 나아져야한다'는 생각으로 논일·밭일·부엌일.....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배추값

은 값값이 되고 소값은 통값이 되니, 얻는 것은 빚더미요 잃는 것은 건강뿐인 농민들, 이것이 올림픽 개최를 요란스레 자랑하는 우리나라 농촌의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다. 이 여성들의 모임은 이러한 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농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직접 힘쓰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보자는 뜻에서 82년에 처음 이루어졌다고 한다.

"처음엔 혼자서 가계부를 이리저리 꾸리면서 아꼈어요. 그러다보니 하나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낫지 않을까 싶었지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했죠. 좋

은 일 하자는데... 하면서 기꺼이 도와주마 했어요. 다음은 시누이를, 다음은 친구들을 만나 결실을 보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잘되면 사돈에 팔촌까지도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위원장이라 말하긴 참 쑥스럽지만 어쨌든 이 모임의 '장'을 맡고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김경자씨.

"82년에 주위 몇몇 친구들과리 시작한 했지만 저마다 개인사정이 있어 들쭉날쭉 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하는 일의 뜻을 좀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겠다는 필요성이 더 절실했지요. 그래서 85년에 들어서면서 좀더 공신력을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성 농민을 위한 모금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후 사무실을 열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임은 모금을 하는 활동 이외에

우리 회사 위장취업자

이정환 (육산봉제 노조위원장)



우리는 부천시 성고문사건의 편양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위장취업자'였다. 우리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학력을 감추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으로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위장취업자'.

바로 그 '위장취업자'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데, 보통 밝혀지기만 하면 무작정 해고되곤 하던 예와는 달리 우리 직장에서는 그 사람으로 인해 없었던 노동조합이 생겨나고 우리의 처지가 정말로 '개선'되게 되었다. 지난 1월 14일의 일이었다.

우리 육산봉제는 종업원이 1백50여 명으로, 성남공단에서도 좀 떨어져있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다. 그러나 지난 8월에 불어닥쳤던 임금인상 열기는 이곳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들은 톱툰 뭉쳐 '일당 4백원 일률적 인상'이라는 감격을 맛보았었다. 그러나 일이 하도 순조롭게 진행된 나머지 우리는 '이런 조그만 사업장에서 무슨 노조가 필요하겠냐, 노사가 잘 협조하면 될 것이다'라고 한가닥 방심을 남기고 말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싸움에 앞장섰던 김미아씨가 '위장취업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었다.

그러나 뒤이은 선거열풍 때문인지 당장은 그 어떤 조치도 없었다. 그러더니 회사측은 올해 들어 -선거가 끝나갈 때 맞춰- 1월 7일과 11일 연이어 김미아씨를 불러 3개월치 해고수당과 보상을 할테니 나가라는 협박을 가해온 것이다. 물론 김미아씨는 부당하다고 거절했다. 그랬더니 12일부터는 아예 공장 셔터를 내렸다. 김미아씨는 지지않고 우리들의 도움으로 현장에 들어와 해고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곧 관리자들이 나타나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끌고나가려 했고, 말리는 우리들의 비명, 관리자들의 고함·욕설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후 회사측은 김미아씨가 나가지 않으면 관리자들 사퇴로 회사운영이 안된다는 등 갖은 협박과 회유를 다했지만 우리는 김미아씨가 대졸자라 해도 우리편에 서서 일해준 점, 또 지금까지 몇개월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해고

우리 직장이야기

를 시키냐는 점 등을 들어, 김씨가 나가는 문제에 대해 현장동료들끼리 찬반투표를 하기로 했다. 그러자 회사측은 이와중에 일방적으로 폐업공고를 붙이고 대부분이 여성노동자인 우리들을 길바닥으로 쫓아냈다.

그러나 그 차가운 겨울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던져주었다.

지난 8월 임금인상투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던가. 이는 우리 육산의 여성노동자들을 주축으로 모두가 톱툰 힘을 뭉친 때문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매섭게 부는 겨울바람을 온 가슴으로 맞으며 절실하게 결의했다.

'노동조합을 만들자!'

'단결된 조직이 있어야 힘이 생긴다!'

쫓겨난 바로 다음날인 14일 우리는 성남시청에 노조설립신고를 제출했다. 그리고 회사측의 기만적인 폐업조치에 대한 철회투쟁을 벌여 성공했다. 물론 김미아씨의 해고문제도 없었던 일로 되었다. 회사측으로서는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던 '위장취업자'를 해고시키려다 '노조'라는 흑을 덧붙이게 된 셈이다.

물론 싸움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아직은 노조사무실도 못 열고 있고 또 언제 어떤 식으로 이 가까스로 얻어낸 노조가 허물어질지 모를 만큼 우리의 의식과 준비는 약하다. 그러나 우리의 노동조합은, 우리 스스로 '왜 노조가 필요한가'를 깨닫는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조직이기에 그 어떤 고난과 한파도 뚫고 나갈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도 '땅의 사람들'이라는 회지를 내고 있다. 이 모금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 서로간의 소식, 여성농민들의 살 소개, 다른 단체들의 활동 소개 등을 담고 있는



데 1년에 한번 정도 발간되며 지난 1월 7일자로 제4호가 나왔다. 이번 4호에는 서독 회원들이 보내온 편지도 실려 있다.

"우리 성의가 모여 농민을 위해 일하는 분들에게 힘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누군가 새롭게 우리 한 식구가 되어준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때가 제일 반가운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함께 하던 사람들의 소식이 뜸해지고 이 모임에서 떠나게 될 때는 가슴이 뜨끔해요. 혹시 무슨 잘못은 없었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죠"

일의 중심이 '돈을 내는 일'이기에 이 '독특한' 모임이 어떻게 꾸러져 나갈지는 듣기만 해도 참 걱정스러웠다. 회원 중에는 한두번 흔쾌히 모금을 해주다가도 곧 시들해져 버리거나, 일의 의미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이 모임은 앞으로 회원들끼리 농촌문제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매년 나오는 회지 '땅의 사람들'을 좀더 알차게 읽어 회원들간의 탄탄한 끈이 되게끔 하는 것도 계획중의 하나다.

또 이 모임의 회원을 확대해나가는 일은 이 모임이 있을 필요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현재까지는 온라인 구과를 이용한 매월 현금(3천~1만원까지) 각자 형편에 따라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방법)과 이 '병모금'에 의한 모금에 의존해 왔지만 좀더 다양한 모금방법을 생각해내기 위해 회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있다.

취재를 마치고 나설 때 한 회원이 재빨리 병 하나를 집어주며 소리쳤다.

"가져가서 모금좀 해주세요!"

• 문의 : 739-8664



3개월만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근무한지 3개월이 안될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도 해고시킬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요. 그러나 칼자루를 쥔 기업주들은 이 규정을 마구 확대해석해서 억울한 해고를 정당화시키는 구실로 삼고 있습니다.

문의 직장생활 3개월의 사회초년생입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치 못해 일찌기 여상에 진학한 저는 졸업을 2개월 앞두고 ○○회사의 정직원원으로 채용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세법 많은 업무도 손에 익고 이제는 의젓한 사회인으로 앞날의 설계에 가슴 부풀어 있던 어느날, 총무부장의 호출이 있었습니다. 경영난으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연락이 있을 때까지 잠시 쉬면서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달리 어쩔 도리가 없어 회사의 연락만을 기다리며 한달을 지내고서야 이것이 듣기 좋게 표현한 '해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마 이 사실을 집안식구들에게 알리지 못한 저는 오늘도 출근하는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 여기저기 부락해둔 취직자리에서 연락이 와있기만을 고대하면서 퇴근(?)을 서두릅니다.

속수무책으로 회사를 나와버린 저의 어리석음에, 회사측의 비열한 처사에 분노하였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엄청난 벽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자의 입장인 사장님이라고 이처럼 한 인간의 희망과 가능성을 마구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개뿔통에서 김은희

대답 그렇습니다. 수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거대한 자본과 권력을 쥐고 있는 기업주라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는 단 한사람의 노동자도 함

부로 해고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휴직·정직·전직·감봉 등의 징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는 당연히 무효인 것입니다(대법원판례 1969년 3월 31일 69다135).

또 정당한 사유의 해고라 할지라도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해고수당(통상 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몇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이러한 단서조항들은 노동자들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와도 모순되는 것으로 앞으로는 마땅히 없어져야 할 조항들입니다.

더구나 많은 기업주들은 정당한 해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국한된 단서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시켜도 되는 것으로 오인, 김은희씨 경우처럼(위의 3항에 해당) 마구 칼자루를 휘둘러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적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해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법만으로는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몇년전에는 국내유수의 대기업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무려 1만여명의 노동자를 무더기로 길거리로 내몬 적도 있었으니깐요(1985년 옥포조선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냉엄한 현실앞에서, 거대한 기업주의 힘에 대항하여 노동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모여진 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들을 단체행동, 단체교섭 등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정부나 기업주가 노동자의 문제를 미리 알아서 해결해 준 예는 없습니다.

온갖 좋은 법적인 장치도 노동자의 힘이 약해지면 무시되고, 반대로 노동자의 힘이 커지면 법의 한계보다 유리한 조건들도 쟁취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상담실에서 꼭 들려주고 싶은 김은희씨 또래 여성노동자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시달리면서 언제 우리 노동자가 이유없이 무정하고 남을 해친 적이 있는가! 최소한 노동자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소망 외에 우리가 무슨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한다.

(구체적 구체절차 등은 지난호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자독후감

엄타이 울면 알을 낳는다

이현순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최순덕 지음 /
『엄타이 울면』/
동녘출판사 /
값 3천원

우리 노동자 대부분은 하루하루 작업장을 오가며 열심히 살려고 애써도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유를 우리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배우고 싶은 열망이 간절해도 배울 수가 없는지, 온 집안 식구가 뼈빠지게 일해도 왜 가난한지를 단순히 '세상이 그러니까'라고 생각해 버린다.

또한 여자도 남자와 똑같은 시간을 일하고 친구들을 부양하고 월급에서 세금 내고 방값을 내는데도 남자들보다 훨씬 적은 월급봉투를 받는다. 이럴 때 억울하기도 하지만 '여자니까'라고 체념해 버린다. 왜 여자라는 신체적 차이 하나로 임금과 직종에서 차별을 받는지, 왜 결혼하고 임신하면 퇴직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책방

에 가보면 노동자를 위한 책은 참 많다. 사업장에서 부딪치는 문제들과 노동자들의 삶을 다룬 시와 소설들……. 그러나 이런 책들을 보고나면 묘한 쓸쓸함이 남는다. 노동자를 생각하고 노동문제를 고민한 흔적은 있지만 한발 건너 연민의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거리감이 느껴지고 우리의 답답한 의문을 속 시원히 풀어주지 못한다.

그런데 얼마전 『엄타이 울면』이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은 가난한 여성 모두를 위한 책이다. 모든 여성이 차별을 받긴 하지만 '논두렁에 아기를 늘어놓고 일하는 여성농민들' '자식한테는 농사짓게 하기 싫어 도시로 나왔지만 누울 자리 하나 마땅치 않은 빈민여성들' '12시간 노동, 10만원도 채 안되는 저임금 그리고 관리자들의 폭행과 회롱 등에 시

달리는 여성노동자들'이 더욱더 심한 차별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가난한 여성들의 단결만이 차별을 해쳐나가는 길임을 일깨워준다.

모두가 기뻐하는 세상은,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사이의 불평등이 뿌리째 없어지고 여성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의 사회이다. 이러한 세상을 만드는 데 여성노동자가 해야 할 일은 중요하다. 공동노동을 하면서 단결의 의미를 깨달은 여성노동자가 새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앞장서야 한다는 글을 읽으면서 여성노동자인 나의 위치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엄타이 울면』을 읽고 나는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내 삶을 지탱하는 노동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새삼 해보았다. 지금까지 가졌던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주위 동료들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확인임도 알게 되었다. 또한 우리의 싸움은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어머니·언니들의 싸움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은 뿌듯한 힘이 되었다.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의 당당한 깨달음과 일어섬이 하나로 뭉쳐질 때 가난한 모든 여성이 무거운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일깨워준 이 책을 모든 여성에게 권하고 싶다.

「함께 가는 여성」을 읽고

가난한 엄마들의 이야기가 빠진 이야기마당

나는 인천 십정동 산동네에 사는 30대 주부이다. 우연히 공부방에서 「함께 가는 여성」에 실린 이야기마당을 읽고는 내용에는 꼭 공감이 가면서도 왠지 거리감이 느껴졌었다. 이게 나만의 생각일까 하여 우리 동네 몇 엄마들과 함께 돌려 읽고 얘기를 나눠보았다.

우선 교육문제중 가장 큰 문제로 꼽은 '시험'에 관한 얘기를 보자. 우리 동네 엄마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차별 대우,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데 따른 시간과 돈과 지식의 부족이다. 아이가 6살 정도만 되면 가내부업을 그만두고 공장에 다니기 시작하는 우리네 사정으로는 국민학교 입학전에 한글이나 발표력 등 기본 능력을 자녀에게 키워줄 여유가 없고, 간혹 일일공부 시험지를 보게 하거나 주산학

원에 보내더라도 제대로 돌봐줄 여유가 없다. 그래도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입학시키지만 한두달 뒤면 안배우고 못배운 표시가 나, 아이는 아이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문제야, 문제엄마로 적히게 된다.

남편의 실직으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도맡아 공장에 다니는 한 엄마는 교사로부터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문제아인 당신 아이나 잘 가르치라는 면박을 받았다고 한다. 대개가 중간층 출신인 교사들의 타계층 아동에 대한 물이해와 관심 부족은 아이들에게 배우는 재미를 잃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급기야 엄마 몰래 학교를 결석하는 일까지 생기게 한다. 또한 엄마들은 교사로부터 당한 모멸과 죄스러움으로 교사를 경원하게 된다.

아이들이 3학년이 되면(특히 여자의 경우) 늘어나는 교육비, 생활비 부담에 전업까지 해야하는 엄마를 대신하여 밥짓기, 빨래하기, 동생 돌보기 등

으로 부진한 학력을 보충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학교에서의 아이 성적이 엄마의 성적이 되는 것이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는 한 엄마는 나같이 못배우고 일해야 하는 엄마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지식부족의 안타까움을 호소한다. 그 분은 유치원생인 딸의 질문에 대답을 못해 어떤 엄마가 자살까지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2의 그런 엄마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이 글에서 언뜻 느끼는 거리감은 다름 아니라 이렇게 돈과 시간과 지식이 전적으로 부족한 가난한 엄마들의 얘기가 이야기마당의 중심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모든 소재가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외여질 수는 없겠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이야기들이 어디서든 빠뜨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게 한 독자로서의 바람이다.

엄미숙 (인천 북구 십정동)

제3기 직장여성교실 3월 5일부터

본회는 3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주 1회 열리는 '제3기 직장여성교실'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직장여성이 당면하고 있는 노동문제 및 여성문제 그리고 기타 제반 사회문제 등을 함께 이야기하고 정리해볼 기회로서 마련되는 본 교실의 기본목표는 ① 적극적인 주체적인 삶의 자세 확립 ② 여성문제의 이해와 바람직한 직업관 확립 ③ 민주시민의 역할 이해 등입니다.

●첫째날: 3월 5일(토) 3시

여자 팔자 두레박 팔자라는데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여성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삶을 생각해봅시다.

- 슬라이드 '성차별문화와 여성'
- 강의 '주체적인 삶과 여성의 직업의식'

-김경애(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

●둘째날: 3월 11일(금) 7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해방이후 한국사회를 머리로, 피부로 느끼는 시간입니다.

- 강의 '한국사회의 이해'
- 장명국(노동문제 전문가)-

●셋째날: 3월 19일(토) 3시

여성은 남성보다 능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오늘날의 여성의 지위를 알아보고, 나아가 일하는 여성들의 문제 또한 진지하게 이야기해봅시다.

- 강의 '현대산업사회에서의 여성문제'

-지은희(덕성여대 강사)-

●네째날: 3월 25일(금) 7시

우리 가까이서 생활하고 일하는 직장여성들이 당면한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고, 자주적인 직장여성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 강의 '자주적 직장여성성과 여성운동'
- 이옥경(이화여대 강사)-

●다섯째날: 4월 2일(토) 3시

법이란 딱딱하고 어렵다는 선입견을 깨고 직장여성성과 관련된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입니다.

- 강의 '여성법'
- 이은영(외대 교수)-

●여섯째날: 4월 9일(토) 4시~4월 10일(일)

선배언니와 대화도 나누고, 우리들의 고민도 함께 풀어보고, 신명나게 어울어져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된 힘으로 생애는 평생일터를 가꾸기 위한 방법도 모색해 봅시다.

- 평생직장을 위한 사례발표
- 강의 '보람된 직장생활과 조직운영의 실제'
- 최영희(한국여성민우회 부회장)-
- 공동체놀이

- 장소: 한국여성민우회 교육실
- 수강료: 2만원
- 접수마감: 2월 27일
- 문의: 313-1060

「함께 가는 여성」에서 알려드립니다

• 본 신문의 발행일은 매달 1일입니다. 1월호, 2월호 두달에 걸쳐 발행일자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를 직접 작성해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본 편집실로 사건을 알려줘 취재를 의뢰해 주셔도 됩니다. 자신이 겪은 일, 자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사회사건에 대한 견해 등 형식과 내용에 상관없이 어떠한 원고도 환영합니다.

• 원고 등을 우송하실 분은 120-0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로3가 30-6 한국여성민우회 「함께 가는 여성」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 가는 여성」을 받아보시려면

① 본 신문은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실이나 전국 몇몇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가격은 1부에 5백원).

② 본 신문을 정기적으로 구독하시려면 본회의 '신문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연회비 7천원). 아래의 온라인으로 송금을 해주시고 직접 방문이나 전화로 본인의 성함과 주소, 연락처 등을 말씀해 주시면 매월 신문을 우송해 드립니다.

③ 자세한 문의는 313-1060

- 송금하실 곳
상업은행 109-08-195935 홍영주
제일은행 277-20-195962 홍영주

아리랑택



한국여성민우회 상담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생산노동 현장에서 우리 여성들이 안고있는 고민을 안심하고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되고 그 가운데 발굴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여성문제 전반에 관한 사항: 연애, 결혼, 성문제, 그의 성차별적 문제
 - ② 노동문제에 관한 사항: 임금 및 각종 수당, 해고, 산업재해 및 노동조합 활동과 교육에 관한 문제
 - ③ 교육문제에 관한 사항: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느끼는 자녀양육, 학교 교육에 관한 문제
 - ④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구제 방법 및 절차와 서류작성
- 상담시간은 월·수·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면접상담을 원칙으로 하나 우리 여성들이 처해 있는 여러 현실을 감안하여 서신상담과 전화상담(313-1060)도 합니다.